## 고교 졸업예정자의 청년공제 가입가능 시점 안내

('18.8.31.,

□ (현황) 그간 교육부에서 고교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함에 따라, 청년공제도 최소 동계방학 이후 취업한 자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

(p.8) II-1. 2년형 청년공제 가입

1. 청년

1-1. 기본 가입자격

다. (학력) (중략)

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<sup>\*</sup> 후 취업한 자 \*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- □ (개선)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'현장실습 선도기업'으로 인정\*하면, 해당 기업은 채용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  - \* (기준) 각 산업분야 특성, 고졸채용실적,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역량, CEO 의지, 안전대책, 학생 및 학교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기준 설정
  - \*\* (절차) 학교-기업이 현장실습 신청서 제출→위원회(서면심사 및 현장실사) 검토→인정
  - 따라서, 아래와 같이 Two-track으로 채용 시기를 운영함에 따라 청년 공제 가입가능 시점도 탄력적으로 조정
    - (현장실습 선도기업)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,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 일수 2/3 출석 이후 채용 가능
      - ⇒ 취업(정규직)으로 인정하는 시점부터 청년공제 가입 가능
    - (일반 산업체)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, 동계방학 이후 채용 가능
      - ⇒ 기존과 동일하게 동계방학 이후 취업자(정규직)부터 청년공제 가입 가능
      - ◈ 현장실습 선도기업 확인 방법
      - (방법①) 특성화고, 마스터고 포털 사이트(www.hifive.go.kr)에서 조회 가능
      - (방법②) 학교 또는 해당학교 관할 교육청에서도 확인 가능
        - \*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심사하는 중이므로, 최종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지되기 전까지는 '방법②'를 통해 확인 바람

## www.hifive.go.kr 운영지원센터(1544-1253) 전화 확인 내용 (2018.12.11. 16:45)

1. <현장실습 선도기업>은 올해 처음 생긴 제도로.

현재 홈페이지에서 인증 기업 명단을 검색한다거나 명단 파일을 내려받기 할 수는 없으나, 기업이나 학교가 운영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고 함.

## 2. 증명서 관련

-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각 교육청 교육감 승인(확인서 발급권한이 교육청에 있음)
- 2주 전(전화 확인일 2018.12.11. 기준) 각 교육청에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식 등을 전달하였다고 함
- 확인서 서식에 '인정일'과 '발행일'이 있으니, 각 일자 사이 기간 동안은 선도기업으로 승인된 기간이라 보면 된다고 함(고용노동부 강소기업처럼 유효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은 듯). 특별히 승인취소가 된 사례는 없으나 '현재 사항'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 상 '인정일'과 '발행일'로 확인하라고 함

## 2-1. 증명서 발급 요청 방법

- ① www.hifive.go.kr 화면 하단 링크사이트 부분 '취업지원센터'에서 해당 지역 취업지원센터 선택
- ② 해당 취업지원센터(교육청) 홈페이지로 이동하여,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로 해당 기업이나 학교가 전화하여 확인서 발급 요청

\*\*\*\* 전화확인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이므로 이후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. 별도 확인바람 \*\*\*\*